입니다. 심지어 중재부에서 1/10 수준의 조정액을 제시하더라도 애초 제시액이 너무 크므로 당사자가 수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관련 신청효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선거 때마다 언론사의 부당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후보자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사실관계에 상관없이 자신의 유·불리 여부만 따져 신청하는 후보자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자체 장이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 언론통제의 수단으로 조정중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언론사도 문제지만 후보자나 지자체의 장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 중재부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영 주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자)

- 언론조정중재제도 우리 고유의 언론피해구제제도로 정착

손해배상 직권결정 액수는 200~1,000만원 사이로 영세 언론사에게는 큰 타격입니다.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금전적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직권결정 중에서 반 이상의 사건에 대해 언론사가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으로 가는데 법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소를 취하합니다. 법원에서 신청인이 승소하기 쉽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법원에서는 징벌적 배상액 수준에 미치지는 않지만 옛날에 비해 손해배상액수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중재위원회의 손해배상 액수는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문방송학자로서 언론기본법이 만들어졌을 때 이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언론조정중재제도가 많이 발전하여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한 언론피해구제제도로 정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고쳐야할 부분도 있겠

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기 전 법원의 문턱이 높았고 일반인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웠던 점에 비해 언론중재제도로 인해 무료로 간편히 언론사에 접근할 수 있어 수용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도 언론중재제도를 언론자유의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기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사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보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단점만 보도할 경우 편파보도가 됩니다. 편파보도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신청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러한 관점 등을 고려하여야 새로운 의미의 언론자유가 신장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Free Press 같은 단체의 조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도가 10여 년 전 2~30위에서 60위권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 남 태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장)

- 2014년, 세월호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청구건수 급증

토론회 자료집 12페이지에 연도별 사건 추이가 있습니다. 2013년에는 2,433건이었으나 올 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7,498건으로 되어 있고 11월 26일 현재 12,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세월호와 관련된 보도가 많았는데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유병언 씨의 유족들이 신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11월 26일 현재 관련된 청구 건수가 10,375건입니다. 도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건 수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